

韓國의 所得政策과 所得再分配 效果

朴 東 雲*

目 次

- | | |
|--------------------------|-------------------|
| I. 序 論 | 1. 所得政策의 一般的인 效果 |
| II. 所得政策의 背景과 方法 | 2. 所得政策과 所得再分配 效果 |
| 1. 理論的 背景 | IV. 結 論 |
| 2. 賃金과 物價의 規制方法 | 1. 要 約 |
| 3. 所得政策의 種類 | 2. 政策의 시사점 |
| III. 韓國의 所得政策 : 所得再分配 效果 | |

I. 序 論

韓國經濟가 1980년에 實質 GNP 成長率 -6.2%와 消費者物價 上昇率 32.1%를 기록한 St-umpflation을 經驗하게 되자 韓國政府는 物價安定化政策을 經濟政策의 가장 중요한 目標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一連의 政策手段과 政策方案을 계속해서 발표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賃金과 物價規制를 바탕으로 經濟의 安定化를 이룩하려고 하는 소위 所得政策 (incomes policy)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韓國에서 所得政策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기는 1983년 9월에 政府가 발표한 1984年度 政府豫算案이 그 처음이 아닌가 싶다. 물론 1982년과 83년에도 賃金과 物價規制에 관한 政府의 政策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결코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84年度 政府豫算案에 의하면 政府는 84년도 都賣物價 上昇率과 공무원의 賃金 上昇率을 각각 0%로 凍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政府는 同 豫算案의 발표에 이어 民間企業의 賃金 上昇率도 0%로 凍結하고 賃貸料나 配當率까지도 일정한 水準에서 凍結할 것을 유도해오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韓國政府는 이러한 政策을 “所得政策”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政策이 韓國經濟에 미치게 될 效果를 所得政策의 차원에서 論議한 적도 없다. “所得政策이란 賃金이나 利潤과 같은 名目所得의 增加를 抑制하고 그 相對的 分配에 影響을 미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政策”¹⁾이라고 一般的으로 정의되고 있다.

* 本 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副教授

1) D. Greenwald, ed., *Encyclopedia of Economics* (McGraw-Hill, 1982), p.488.

따라서 이 글은 先進國들이 採擇해오고 있는 所得政策을 바탕으로 所得政策이란 무엇이고,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는 무엇이며, 所得政策을 韓國經濟에 적용할 때 그것이 內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論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本序論에 이어 Ⅱ에서는 所得政策의 理論的 背景, 方法 및 種類를 살펴보고 Ⅲ에서는 韓國經濟와 關聯해서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와 所得政策의 妥當성과 可能性을 論한 다음 Ⅳ에서는 이 글의 要約과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研究에는 計量分析이 必須的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모델의 설정은 문제될 것이 없 다 할지라도 豫測에 사용될 資料의 時間的 制約으로 말미암아 現시점에서 計量分析이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Ⅱ. 所得政策의 背景과 方法

“一般的으로 所得政策은 賃金이나 非賃金, 그리고 物價의 결정에 있어서 이를 지키기만 하면 雇傭目標을 犧牲하지 않고 物價를 더욱 安定시킬 수 있는 어떤 基準을 도입하려고 하는 政策”²⁾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이해하기 위해서 所得政策의 理論的 背景, 規制方法, 規制種類를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 理論的 背景

所得政策의 理論的 背景은 필립스커브理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립스커브理論은 賃金(또는 物價)上昇率과 失業率 사이에는 安定的인 負의 關係-trade-off 關係-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³⁾ 이 理論은 A.W. Phillips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필립스커브理論은 政策立案者들에게 一連의 可能的 政策的 選擇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어져 政策運用에 幅넓게 적용되어 왔다. 즉 한 經濟는 通貨와 財政政策의 援用을 바탕으로 일정한 水準의 失業率과 인플레이션의 組合을 選擇할 수 있도록 그 可能性을 마련해준 것이다. 예를 들면, 8%의 失業率과 0%의 物價上昇率, 5%의 失業率과 3%의 物價上昇率, 또는 3%의 失業率과 7%의 物價上昇率등의 組合의 選擇이 바로 그것이다.

2) D.C. Smith, "Incomes Policy", in *Incomes Policy and Inflation*, ed. by M. Parkin and M.T. Sumn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2), p.48.

3) A. W. Phillips,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a* 25(November, 1958), pp.283-99.

그러나 이와같은 失業率과 物價上昇率 간의 安定的인 負의 關係는 1960 년대를 지나 1980 년대에 이르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곧 필립스커브 理論이 短期에 있어서는 그 妥當性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短期의 필립스커브는 右側으로 이동하게 되어 주어진 失業率에서 物價上昇率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필립스커브 理論은 短期를 除外하고는 더 이상 政策的 有效性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에 관해서 M. Friedman은 그의 노벨經濟學賞 수상연설논문에서 필립스커브 理論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⁴⁾ 그는 失業率과 인플레이션 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필립스커브의 형태가 1 단계에서는 負의 기울기를 가지나 2 단계에서는 自然失業率假說을 바탕으로 垂直線에 가깝거나 垂直線이 되며 3 단계에서는 政治的인 이유등으로 오히려 正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필립스커브는 왜 右側으로 이동해오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失業率의 증가는 왜 인플레이션을 수반해오고 있는가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일반적으로 첫째, 勞動力의 構造變化로 인한 失業率의 증가⁵⁾ 둘째, 政治에 의한 經濟運用 失策, 「오일 쇼크」로 인한 世界的인 不況 三째, 財政과 通貨政策의 過誤 四째, 勞組에 의한 賃金引上등의 면에서 요약⁶⁾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그 決定要因 자체가 워낙 複合的이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治癒를 위한 적절한 處方이 갖춰져 있지 않는 狀態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治癒의 한 방법으로서 오래 전에 인정을 받게 된 所得政策은 오늘날 많은 先進國에서 採擇되고 있다.⁷⁾ 所得政策은 政府가 賃金과 物價決定에 관해서 일정한 水準을 제시함으로써 賃金과 物價의 動向을 直接 規制하려는 政策으로서 그 핵심은 賃金引上을 抑制하여 費用引上을 통한 物價上昇을 막고 따라서 物價引上에 대한 期待心理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所得政策은 短期의 필립스커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左側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政策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2. 賃金과 物價의 規制方法

所得政策에 있어서 賃金과 物價를 規制하기 위한 方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⁸⁾

4) M. Friedman, "Inflation and Unemployment: The New Dimension of Politics" (IEA Occasional Paper 51, 1977).

5) R.G. Ehrenberg and R.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2), pp.462-72.

6) R. Jackman, C. Mulvey and J. Trevithick, *The Economics of Inflation* (Martin Robertson, 1981).

7)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J.L. Fallick and R.F. Elliott, ed., *Incomes Policies, Inflation and Relative Pay* (George Allen & Unwin, 1981)이 도움이 될 것이다.

8) R.G. Ehrenberg and R.S. Smith, *op. cit.*, Ch. 16.

(1) 賃金引上計劃(WIP: Wage Increase Plan)

賃金引上計劃은 경제전반에 걸친 巨視的인 次元과 個個의 企業과 關聯된 微視的인 次元에서 論議해야 할 必要가 있다. 우선 巨視的인 次元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生産함수가 있다고 하자.

$$Q = AL^\alpha K^\beta, \quad \alpha + \beta = 1$$

여기에서 Q : 실질생산량, A : 기술지수, L : 노동량, α : 노동소득분배율 또는 노동의 生産 탄력성, K : 자본량, β : 자본소득분배율 또는 자본의 生産탄력성, $\alpha + \beta = 1$: 規模에 대한 收益不變을 나타낸다.

위의 生産함수에서 노동의 限界生産성(MP)과 노동의 平均生産性(AP)을 유도하면,

$$\begin{aligned} MP &= \alpha AL^{\alpha-1} K^\beta = \alpha \frac{Q}{L} \\ AP &= AL^{\alpha-1} K^\beta = \frac{Q}{L} \end{aligned}$$

만일 競争市場을 가정하면 실질임금(w)은 노동의 限界生産성과 같게 되므로

$$w = \alpha \frac{Q}{L}$$

이를 바꿔쓰면

$$\alpha = \frac{w \cdot L}{Q}$$

여기에서 α 는 노동소득 분배율 또는 生産 단위당 노동비용율을 나타낸다. 勤勞者의 立場에서는 勞動所得 分配率의 向上이라는 점에서 α 의 增加가 바람직하지만 企業家의 立場에서는 費用의 인하라는 점에서 α 의 감소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Cobb-Douglas 生産함수의 前提條件이 그러하듯이 α 는 變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정하고 위의 식을 時間에 대해 微分하여 增加率로 나타내면(·은 增加率을 나타냄)

$$0 = \dot{w} - \left(\frac{\dot{Q}}{L} \right)$$

이를 정리하면

$$\dot{w} = \left(\frac{\dot{Q}}{L} \right)$$

이는 곧 勞動所得 分配率 또는 單位勞動費用率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實質賃金增加는 勞動生産性增加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勞動生産性增加가 賃金增加에 그대로 반영되 單位當費用增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非인플레이的 賃金增加(noninflationary wage

increase)라 부르고⁹⁾ 이는 賃金引上計劃에서 하나의 중요한 基準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는 賃金-生産性 관계에 관한 巨視的인 次元에서의 論議를 個個의 企業과 關聯된 微視的인 次元의 論議에 適用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個個의 企業이 賃金增加를 어떤 基準에 맞춰 결정해야만 經濟 전반에 걸쳐 物價가 安定(0%의 上昇率)될 것인가 하는 점이 論議의 軸점이 된다.

이제 勞動所得 分配率 또는 勞動費用率이 일정하기 위해서 i 산업의 名目賃金(W)은 經濟 전반에 걸친 平均 勞動生産性만큼 增加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즉,

$$\dot{W}_i = \left(\frac{\dot{Q}}{L}\right)$$

i 산업의 賃金增加가 위와 같이 결정되면 i 산업의 單位勞動費用(ULC)增加는 i 산업의 生産性 增加率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dot{ULC}_i = \dot{W}_i - \left(\frac{\dot{Q}}{L}\right)_i$$

이 식에서 만일 i 산업의 賃金增加가 生産性增加보다 높으면 單位勞動費用은 增加하게 되고 그 반대면 減少하게 된다. 위의 식에다 W_i 대신 平均 勞動生産性 (Q/L) 을 바꿔 넣으면,

$$\dot{ULC}_i = \dot{W}_i - \left(\frac{\dot{Q}}{L}\right)_i = \left(\frac{\dot{Q}}{L}\right) - \left(\frac{\dot{Q}}{L}\right)_i$$

이 식은 i 산업의 單位勞動費用增加는 i 산업의 生産性 增加와 經濟 전반에 걸친 平均 勞動生産性 增加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만일 i 산업의 生産性 增加가 平均 勞動生産性 增加보다 높으면 i 산업의 單位勞動費用은 감소하게 되고 그 반대면 增加하게 된다.

이와같은 論理는 物價安定化政策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生産性 增加가 平均 生産性 增加보다 높은 산업에서는 單位勞動費用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 산업의 物價는 單位勞動費用의 감소만큼 下落해야 하고 生産性 增加가 平均 生産性 增加보다 낮은 산업에서는 單位勞動費用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 산업의 物價는 單位勞動費用의 증가만큼 上昇해야 한다. 이 결과는 經濟 전반에 걸쳐 物價의 安定을 가져오게 된다.

이 論理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던 美國의 Wage-price guidepost의 핵심을 이뤄왔다.

(2) 暫定的인 賃金-物價 凍結

이와 같은 規制는 經濟가 不況에 빠져 있는데도 物價가 상승할 경우 政府가 賃金과 物價를

9) W.H. Branson and J.M. Litvack, *Macroeconomics*, 2nd ed., (Harper and Row, 1981), p.311.

暫定的으로 凍結함으로써 經濟의 安定化를 이룩하려는 政策으로서 어떠한 理論的 根據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무조건 凍結이라는 점에서 暫定的으로 貨金과 物價의 上昇만을 抑制할 수 있을 뿐이다. 1974년 8월 美國의 Nixon 行政府가 취한 90일간의 貨金과 物價의 凍結이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남아 있다.¹⁰⁾

(3) 租稅를 바탕으로 한 所得政策(TIP: Tax-Based Incomes Policy)

政府의 規制가 어려울 만큼 經濟體制가 競爭的인 경우에는 所得政策의 效果가 短命에 그칠 可能性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補完하기 위해서 제안된 政策의 하나가 TIP으로서 基本的인 規制方法은 "guidepost가 제시한 숫자보다도 더 많이 貨金增加를 결정한 企業에게는 法人稅에 다 加算稅를 부과"¹¹⁾ 하는 方法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t_i = t_0 + \alpha(\dot{W}_i - \dot{W})$$

여기에서 t_i : i 企業의 실효세율, t_0 : 기본세율, $\alpha > 0$: TIP과 관련된 加算稅率, $\dot{W}_i = i$ 企業의 임금인상율, \dot{W} : 정부가 제시한 임금인상율을 나타낸다.

만일 政府가 제시한 guidepost를 위반했을 때 企業에 부과되는 加算稅의 크기는 α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政府가 제시한 貨金引上率이 5%인데도 어느 企業이 7%의 貨金引上을 시도했다면, α 가 1인 경우, 그 企業의 法人稅率은 2%「포인트」가 더 많아지게 된다.

(4) 其他의 方法

지금까지 세가지의 대표적인 所得政策의 規制方法만을 論議해왔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에서는 위의 方法들을 여러가지로 변형시킨 形態의 規制方法을 採擇해오고 있다.¹²⁾

3. 所得政策의 種類

貨金과 物價의 規制種類는 일반적으로 다섯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¹³⁾

(1) 公的監督(Public monitoring)

이는 가장 온건한 形態의 貨金-物價規制方法으로서 監督機關이 所得政策의 必要性을 예고한 후에 企業의 貨金과 物價決定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分析하는 方法이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抑制할 수 있는 監督機關의 能力은 첫째, 所得政策의 必要性을 어떻게 輿論化시킬 수 있는가, 둘째, 政策을 위반한 側이 輿論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反應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10) A.S. Blinder, *Economic Policy and the Great Stagflation* (Academic Press, 1979), pp.352-3.

11) H.C. Wallich and S. Weintraub, "A Tax-Based Incomes Policy,"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5 (June, 1971), p.2.

12) J.L. Fallick and R.F. Elliott, *op. cit.*, Ch. 8.

13) D. Greenwald, *Encyclopedia of Economics* (McGraw-Hill, 1982), pp.488-94.

그러나 이같이 온건한 形態의 所得政策은 賃金과 物價의 動向에 그다지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自發的規制

自發的規制의 所得政策은 政府가 賃金-物價決定에 관한 基準을 정해놓고 企業으로 하여금 이를 自發的으로 따르도록 지켜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政府가 賃金-生産性-物價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賃金과 物價決定에 관한 基準을 제시하면 企業이나 勞組가 이를 自發的으로 따라 주기를 바라는 方法이다. 이같은 所得政策은 1960 년대와 1970 년대 전반기에 걸쳐 실시되었던 美國의 Wage-price guidepost 政策에서 대표적인 예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같은 所得政策이 인플레이션 抑制에 얼마나 큰 效果를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3) 誘引을 바탕으로 한 自發的規制

이 所得政策은 政府가 賃金-物價決定에 관한 基準을 제시한 후 이를 따르는 企業에 租稅減免등의 誘引을 제공하는 方法이다. 앞에서 언급한 소위 TIP이 가장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企業側에 제시되는 誘引方法과 賃金-物價의 基準에 관한 결정이다. 賃金-物價의 결정기준은 一般的으로 賃金-生産性-物價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지나친 租稅減免의 誘引으로 財政赤字가 일어나고 財政赤字가 通貨增加로 補填된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誘發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4) 罰則規制

이것은 政府가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企業이 賃金과 物價를 增加시켰을 경우에 加算稅賦課등을 통해 企業을 처벌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처벌의 기준, 성격, 크기등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은 人力確保를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賃金引上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西歐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5) 強制規制

이것은 政府가 賃金-物價決定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企業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로 規制하는 方法으로 어느 방법보다도 단기에 큰 效果를 거둘 수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는 1971년부터 1974년에 걸쳐 Nixon 行政府가 採擇한 네 단계의 賃金-物價 規制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所得政策의 理論的 背景과 方法등을 살펴보았지만 그 한계가 반드시 분명한 것이냐고 하는 말할 수 없다.

Ⅲ. 韓國의 所得政策: 所得再分配效果

韓國經濟가 1980년에 實質 GNP 成長率 -6.2%와 消費者物價 上昇率 32.1%를 기록하게 되자 韓國政府는 物價安定化를 經濟政策의 가장 중요한 目標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韓國政府는 간헐적으로 賃金과 物價上昇을 抑制할 必要性을 강조해오기도 했으나 이같은 政策이 본격적으로 所得政策의 形態를 취하게 된 것은 1983年 9월에 발표된 1984年度 政府豫算案이라고 생각한다. 同豫算案에 의하면, 政府는 1984년도 都賣物價 上昇率과 公務員의 賃金 上昇率을 각각 0%로 抑制할 것과 뒤이어 民間企業의 賃金 上昇率도 0%로 결정되도록 유인하고 配當과 貨貸料등도 일정한 水準에서 凍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련의 名目所得과 物價가 政府에 의해서 凍結되는 政策은 선진국의 所得政策과 거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筆者는 賃金과 物價에 관한 最近의 經濟政策을 所得政策의 次元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一般均衡理論에 입각하여 韓國의 所得政策이 經濟 전반에 미치게 될 效果와 賃金-物價規制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 후 이 글의 중심과제인 所得再分配 效果를 論하고자 한다.

1. 所得政策의 一般의인 效果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論하기에 앞서 所得政策이 갖는 一般의인 效果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一般의인 效果는 肯定的인 것과 否定的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1) 物價上昇 抑制 效果

所得政策의 基本目標가 인플레이션의 抑制에 있는 것이므로 政府에 의한 物價上昇의 抑制은 그 效果를 短期에서 直接的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效果를 기대하기 전에 政府에 의한 物價上昇의 抑制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必要가 있다. 첫째의 문제는 政府가 物價上昇을 어떻게 抑制하느냐이다. 共產主義에서처럼 統制物價制度가 지배적인 經濟體制에서는 政府에 의한 物價上昇의 直接的인 抑制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에서처럼 競爭物價制度가 지배적인 經濟體制에서는 政府에 의한 物價上昇의 直接的인 抑制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둘째의 문제는 所得政策이 끝난 직후의 物價動向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美國이나 英國의 경우에 所得政策이 끝난 직후의 物價上昇은 종종 새로운 局面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했다.

(2) 雇傭效果

所得政策이 갖는 또하나의 중요한 目標는 不況期에 賃金を 抑制함으로써 失業의 增加를 減少시키자는 데 있다. 특히 勞動組合의 힘이 강한 나라에서는 勞動組合의 賃金引上에 대한 요구가 所得政策에 의해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賃金引上으로 인한 失業의 增加는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賃金에 대한 雇傭彈性성이 零에 가깝다는 研究의 結果를 받아드린다면, 所得政策은 雇傭에 별다른 效果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3) 國際收支改善 效果

所得政策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國內物價의 安定을 바탕으로 輸出增加를 가져와 國際收支를 改善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收支는 國內物價 以外の 다른 要因들에 의해서 주로 影響을 받게 되므로 이에 관해서 納得할만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인플레이션에 대한 期待心理 抑制效果

期待心理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한 주요 要因이라고 받아드린다면 所得政策에 의한 安定된 物價水準의 제시는 期待心理를 抑制하는 데 큰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所得政策이 의도한 대로 物價安定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期待心理의 抑制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期待心理의 抑制라는 면에서는 安定的인 財政-通貨政策이 所得政策에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5) 資源配分 效果

所得政策은 일반적으로 賃金과 物價를 市場의 均衡價格보다 낮은 水準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價格決定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所得政策은 勞動市場과 商品市場에 不足現象을 가져와 資源配分을 非效率化시키게 된다. 이 결과로 經濟의 厚生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論理는 어디까지나 市場이 競爭의이어야 한다는 前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만일 市場이 獨寡占에 의해서 支配되고 價格이 限界費用보다 높은 水準에서 결정되어 있는 狀態에서는 所得政策이 오히려 獨寡占의 價格規制 效果를 갖게 되어 經濟의 厚生을 增加시킬 수도 있다.¹⁴⁾

(6) 所得再分配 效果

所得政策은 根本적으로 賃金과 物價의 上昇을 抑制하려는 政策이므로 그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所得再分配에 效果를 미칠 수 있다. 이 가운데 두가지의 極端的인 경우를 예로 들면, 첫째, 美國의 wage-price guidepost 지침대로 賃金-生産性-物價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相對的 所得分配率은 일정하게 되고 둘째, 역시 美國의 賃金-物價의 暫定的인 凍結과 같이 賃金과 物價가 결정된다면, 經濟 전반에 걸친 生産性的 增加가 零보다 클 경우에는 勞動所得 分配率이 相對的으로 惡化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賃金과 價格決定에 관한 所得政策은 위의 두가지 極端 사이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거의 어느 경우에도 所得政策은 勞動의 相對的分配를 惡化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論議할 것이다.

(7) 其他 效果

所得政策은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른 많은 效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配當까지도

14) J.L. Fallick and R.F. Elliott, *op. cit.*, pp.165-7.

凍結하는 所得政策은 企業의 投資意慾을 고취시켜 生産性이 增加하고 經濟成長이 이뤄질 수도 있다. 所得政策의 시행에 앞서서 財政과 通貨面에서 緊縮政策이 先行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抑制效果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所得政策은 이와같이 여러가지 效果를 가질 수 있다.

2. 所得政策과 所得再分配 效果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주로 巨視的인 側面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韓國政府가 제시하고 있는 所得政策의 내용은 微視的인 側面을 전혀 包含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는 간단한 理論的인 背景을 바탕으로 韓國의 경우를 重點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韓國의 경우: 1984年 豫算을 중심으로

이제 機能的 所得分配가 勞動所得과 非勞動所得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勞動所得 分配率을 S_L , 勞動所得을 $W \cdot L$ (W : 1인당 名目賃金率, L : 雇傭者數), 그리고 名目國民所得을 Y 로 나타내면,

$$S_L = \frac{W \cdot L}{Y}$$

위의 식을 고쳐쓰면,

$$\begin{aligned} S_L &= \frac{W}{P} \cdot \frac{L}{y} \quad (P: \text{물가수준}, y: \text{실질국민소득}) \\ &= \frac{w}{\frac{y}{L}} \quad (w: \text{1인당실질임금을}, \frac{y}{L}: \text{노동생산성}) \end{aligned}$$

위의 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고 양변을 $w/\frac{y}{L}$ 로 나누면,

$$\dot{S}_L = \dot{w} - \left(\frac{\dot{y}}{L}\right)$$

이 식은

$$\text{勞動所得 分配率變化率} = \text{實質賃金 變化率} - \text{勞動生産性 變化率}$$

임을 나타낸다. 이제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는 實質賃金 變化와 勞動生産性의 變化의 차이로써 설명된다. 만일 實質賃金 變化率이 勞動生産性 變化率보다 크면(작으면) 勞動所得 分配率은 增加(減小)하고 두 變化率이 같으면 勞動所得 分配率은 一定하다.

이제 위의 식에다 物價上昇率을 包含시키기로 하자. 實質賃金은 名目賃金を 物價水準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이를 增加率로 나타내어 앞의 식에다 대입하면 (즉, $\dot{w} = \dot{W} - \dot{P}$),

$$\dot{S}_L = \dot{W} - \dot{P} - \left(\frac{\dot{Y}}{L}\right)$$

이 식은 마지막으로 賃金-生産性-物價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所得政策이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가지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所得政策의 내용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政治的인 要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첫째,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전혀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을 目標 중의 하나로 삼는다면, (즉, $\dot{S}_L = 0$) 名目賃金增加率は 政府가 抑制하고자 하는 物價上昇率과 기대되는 勞動生産性的 增加率의 合과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物價上昇率이 0%이고 勞動生産性 增加率이 5%라면 名目賃金 增加率은 5%가 되어야 한다.

둘째, 政府가 인플레이션 抑制을 위해 賃金費用引上 抑制에 더 큰 比重을 둔다면 名目賃金 增加率은 物價上昇率과 勞動生産性的의 合보다 작아야 한다. 예를 들면, 3%의 物價上昇率과 5%의 勞動生産性 增加가 기대된다면 名目賃金 增加率은 이 경우에 8%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前年度의 實質賃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基準이 適用된다면 名目賃金은 3% 이상 8% 이하로 增加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결과로 勞動所得 分配率은 減小하게 된다.

셋째, 政府가 인플레이션의 抑制에만 重點을 두고 賃金, 地代, 利潤 등의 모든 費用과 物價까지도 凍結하게 된다면 賃金增加는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이 경우에도 生産性 增加가 5%로 기대된다면, 實質賃金은 減小하지 않게 되나 勞動所得 分配率은 生産性 增加와 같은 5%나 減小하게 된다.

이제 政府가 발표한 1984年度 豫算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韓國의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게 될 效果를 分析해보기로 한다.

우선 政府는 1984년의 實質 GNP가 7.5%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年平均 3.5% 정도의 雇傭增加率을 적용하면 1984년의 生産性 增加率은 약 4%가 될 것이다. 이제 物價와 賃金增加는 각각 0%로 凍結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유도했던 賃金-生産性-物價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에 관련된 숫치를 대입하면,

$$\dot{S}_L = \dot{W} - \dot{P} - \left(\frac{\dot{Y}}{L}\right) = 0\% - 0\% - 4\% = ?$$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만일 國民所得計定에 나타난 1983년의 賃金所得 分配率이 약 50%라고 한다면 所得政策의 결과로 그것은 84년에는 2%「포인트」가 감소된 48%가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物價와 賃金이 凍結되어 實質賃金은 前年度 水準에서 유지된다 할지라도 7.5%가 되는 高度成長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4%의 生産性增加가 企業家에게 모두 歸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의 所得政策은 相對的 分

配 면에서 勞動所得 分配를 惡化시키게 된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結論이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所得政策의 結果로 인플레이션이 抑制되어 앞에서 言及한 여러가지 肯定的 또는 否定的 效果의 合이 韓國經濟에 positive sum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며 둘째, 企業家에게 歸屬되는 生産性的 增加가 韓國經濟를 好況으로 이끌어가는 原動力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기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韓國과 같은 經濟構造에서 所得政策을 실시한다는 것은 妥當性和 可能性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2) 所得政策의 妥當性和 可能性

韓國의 所得政策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그 妥當성이 비판될 수도 있다.

첫째, 韓國에서는 勞動組合이 사실상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所得政策의 실시는 勞動所得 分配를 惡化시킬 우려가 있다. 所得政策이 실시되고 있는 많은 先進國에서는 勞動組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經濟가 不況일 때 勞動組合에 의한 賃金引上要求는 費用增加를 가져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經濟構造에서 所得政策에 의한 賃金引上抑制는 단기에서 物價安定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韓國經濟에서는 그동안 賃금이 競爭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고 勞動組合의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政府에 의한 賃金凍結은 賃金決定에 관한 雇傭者의 지위를 더욱 弱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所得政策은 說得力을 얻기가 쉽지 않다.

둘째, 韓國의 賃金水準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所得政策에 의한 賃金規制는 더욱 妥當하지 않다. 韓國의 낮은 賃金水準은 國民所得計定상의 낮은 被傭者報酬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被傭者報酬比率는 賃金率과 自營業主 構成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韓國의 경우에는 後者の 比率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被傭者報酬比率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야 어떻든 韓國의 被傭者報酬比率는 先進國이 70%~75%가 되는데 비해 1955년의 日本과 1965년의 臺灣과 비슷한 50%水準이다. 다른 조건이 그대로 있을 때 被傭者報酬比率의 增加는 生産性 增加를 바탕으로 한 賃金 增加에 의해서 決定되는데 韓國의 所得政策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比率를 1984년에는 2%「포인트」나 감소시키게 된다. 그런데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高度成長 기간에는 감소 내지는 일정한水準을 유지해오고 不況 때는 增加 趨勢를 보여오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政府가 7.5%의 高度成長에서 賃金凍結을 통해 勞動所得 分配率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다.

韓國의 所得政策은 또 다음과 같은 네가지 면에서 그 可能性이 비판될 수도 있다.

첫째, 賃金規制는 쉬워도 物價規制는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企業家가 위반했을 경우에 裁制할 수단이 없다. 賃金은 公共部門이나 民間部門에서 일반적으로 年末이나 年初에 결정되지만

物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賃金은 年初에 결정된 채로 그대로 있지만 物價는 年末에 상승해 있게 되면 勞動所得 分配率은 惡化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韓國과 같이 競爭體制를 原則으로 하고 있는 經濟構造에서는 政府에 의한 物價規制란 사실상 不可能하다. 最近 많은 企業들이 1次 5個年計劃 이후 처음으로 價格引下競爭을 벌여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生産性 增加로 인한 費用切減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所得政策에 의한 規制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이같은 價格引下가 競爭에 의한 것이 아닐 때 所得政策의 중단은 다시 價格引上을 가져오게 되어 더 強力한 所得政策을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勞動所得 分配率의 向上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韓國과 같이 外部 쇼크에 민감한 經濟構造에서는 賃金 以外の 다른 要因이 生産費用의 상승에 결정적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賃金만 規制된 狀態에서는 다른 要因에 의해서 物價가 상승하여 勞動所得 分配는 더욱 惡化되기 쉽다.

넷째, 1984년의 租稅 增加는 物價上昇의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84년에는 사실 GNP 生産費用과 關係되는 賃金, 利子, 賃貸 등은 일정한 水準에서 凍結되어 있다. 그러나 租稅는 國稅의 경우에 稅制改編 없이도 9.6%가 增加하여 租稅負擔率은 1983년의 18.9%에서 1984년에는 20.6%로 增加하게 된다. 따라서 약 10%의 租稅 增加는 費用의 增加를 통해 약 2%의 物價上昇을 가져오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所得政策의 可能性은 더욱 희박하게 되고 勞動所得 分配率의 惡化만이 예상될 뿐이다.

이와 같이 韓國의 所得政策은 所得再分配에 여러가지 면에서 否定的인 效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V. 結 論

이 研究에서 얻은 結論의 要約과 政策的 示唆點은 다음과 같다.

(1) 要 約

이 글에서는 韓國政府가 物價安定化를 이룩하기 위해 1984年度 政府豫算案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賃金과 物價의 凍結을, 先進國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所得政策의 次元에서 다루면서 韓國의 所得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중점적으로 分析했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所得政策은 필립스커브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賃金과 物價를 凍結함으로써 短期의 필립스커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左側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政策이다.

둘째, 所得政策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 賃金과 物價規制에 관한 대표적인 方法에는 賃金-生産性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賃金引上計劃, 暫定的인 賃金-物價의 凍結, 租稅를 바탕으로 한 誘引 등 세가지가 있다.

셋째, 所得政策의 種類에는 公的監督, 自發的規制, 誘引을 바탕으로 한 自發的 規制, 罰則規制 強制規制의 다섯가지가 있다.

넷째, 所得政策은 物價安定, 雇傭, 國際收支, 期待心理, 資源配分, 所得再分配등의 면에서 肯定的·否定的 效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勞動所得分配는 賃金과 物價를 凍結한 所得政策으로 인해 분명히 惡化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勞動組合이 사실상 存在하지 않고 賃金 水準이 낮은 韓國과 같은 經濟構造에서는 勞動所得分配가 惡化된다는 점에서 所得政策의 妥當性이 비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競爭을 原則으로 하고 外部 쇼크에 민감한 反應을 보일 수 있는 韓國의 經濟體制에서 物價規制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所得政策의 내용대로 物價規制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勞動所得分配는 더욱 惡化될 수 있다.

(2) 政策的 示唆點

研究에서 얻은 政策的 示唆點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韓國의 勞動市場은 先進國처럼 아직 高度化되어 있지 않고 韓國에는 아직 勞動組合이 存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賃金은 주로 競爭市場에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賃金引上이 費用增加를 가져와 物價上昇을 유발할 可能性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1984年度 政府豫算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所得政策은 勞動市場의 效率性을 저해하고 勞動所得分配만을 惡化시키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先進國型的 所得政策을 韓國經濟에 適用한 것은 반드시 妥當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賃金과 物價의 凍結은 勞動所得分配를 분명히 惡化시키게 될 것이므로 韓國의 所得政策은 實質賃金이 보장되는 水準과 勞動生産性 增加가 實質賃金增加에 그대로 반영되는 수준 사이에서 賃金과 物價를 規制하는 것이 物價安定과 所得分配의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物價上昇을 0%로 規制한다는 것은 經濟成長의 原動力을 弱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1983. 7.29).
- 朴東雲, 金愛實, 「韓國經濟와 勞動所得分配率의 變化」, 經濟學研究 第29輯(韓國經濟學會, 1982.12).
- Blackaby, F., ed., *An Incomes Policy For Britai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ondon, 1972).
- Blinder, A.S., *Economic Policy and the Great Stagflation* (Academic Press, 1979).
- Branson and Litvack, *Macroeconomics*, 2nd ed. (Harper & Row, 1982).
- Ehrenberg R.G. and Smith, R.S.,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olicy* (Scott, Foresman and Company. Illinois, 1982).
- Fallick, J.L. and Elliott, R.F., ed., *Incomes Policies, Inflation and Relative Pay* (George Allen & Unwin, 1981).
- Friedman, M., "Inflation and Unemployment: The New Dimension of Politics" (IEA Occasional Paper 51, 1977).
- Greenwald D., *Encyclopedia of Economics* (McGraw-Hill, 1982).
- Jackman, R., Mulvey, C., and Trevithick, J., *The Economics of Inflation* (Martin Robertson. London, 1981).
- King, J.E., ed., *Readings in Labor Economics* (Oxford, 1980)
- Parkin, M., and Sumner, M.T., *Incomes Policy and Infl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2).
- Phillips, A.W.,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a* 25 (November 1958).

